등록번호	안전치수과-17822
등록일자	2014.9.19.
결재일자	2014.9.19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재난관리팀장	안전치수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협 조			

#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변경계획



**서 대 문 구** 안전치수과

#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변경계획

우리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의 「14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기본계획」을 반영하여 계획변경 추진코자 함.

I	근	거

- □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7조(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)
  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장·단기 계획을 수립·시행
- □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시행령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)
  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
- □ 도시안전과-20884(2014.9.11)호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계획

## Ⅱ 개 요

□ 조사기간 변경

구 분	당 초	변 경	비고
기 간	9.1 ~ 11.15	9.1 ~ 11.30	

□ 조사자 : 시설관리부서[붙임1] 담당

- □ 조사대상
  -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특정관리대상시설
    - 중앙행정기관, 다른 자치단체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제외
    - 공단 등 별도 재난관리책임기관 :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
    - ※ 특정관리대상시설 세부 지정대상: [붙임2]

### Ⅲ 조사내용 및 유의사항

- □ 주요 조사내용
  -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
  -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평가(A~E)등
- □ 안전등급평가(A~E) 방법
  - ○「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」에 따라 토목,전기, 가스,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(30%), 시설(70%) 영역 평가
- □ 일제조사 유의사항
  -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
  - '14. 7. 2. 지침 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
  -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
    -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

- 타 시군구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운영하는 민간 노유자시설이 관내에 설치 된 경우 시설물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·관리
- 시·도에서 인·허가한 시설은 공사기간 중에는 시·도에서, 사용승인 이후에는 시설물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·관리
- 신규 허가인가등록 및 각종 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
  -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(<a hred="http://bti.kict.re.kr">http://bti.kict.re.kr</a>) 또는 e-나라지표(www.index.go.kr)등에서대상을 확인하여 지정
- D등급 공사장 지정대상 범위(지침변경예정)
 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건설현장

#### <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현장>

- · 높이 31m 이상·연면적 30,000㎡ 이상 건축물, 연면적 5,000㎡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. 지하도상가.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
- · 지간길이가 50m 이상 교량, 터널, 댐, 깊이 10m 이상굴착공사 등
  - 중대재해 발생 공사장
    - ·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조의 제7호 : 사망 1명,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, 부상자 10명 발생 현장
  - ※ 단,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공사는 제외하되, 중대재해 발생된 현장은 D급으로 지정

    도로시설 교량 대상범위 개선(지침변경예정)

구분	도로시설 교량
당초	·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
당소	· 100m 이상 농·어촌 교량(비법정도로)
변경	·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
	-「도로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
	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
	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

- [붙임1]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지정
- 토목·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계 접수시 시설관리부서 및 인·허가부서에서 확인 지정하고 안전치수과에 통보
- □ 일제조사 시에는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, 위치도,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물별로 [붙임3]에 따라 정리한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에 입력·관리
- ☐ '14.7.2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
  - 운동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추가 지정
    - 연면적 500㎡이상 ~ 5,000㎡미만인 체육관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골프연습장 등
    - <u>고시원 및 비디오·게임제공업은 숙박·판매시설로 지정</u>

건축물 종류	유형	대상범위
고시원	대형숙박시설	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
상점(비디오· 게임제공업)	판매시설	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

- <u>다중이용시설중 산후조리원, 대형목욕장, 기타 다중이용업소는 '특정관리</u> <u>대상시설등 지정 대상'에서 삭제</u>
- 건축물 상한 규모
  - · 숙박시설, 의료·장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노유자시설
    - → 연면적 1,000㎡이상 ~ 5,000㎡미만
  - · 공연시설, 휴게시설 → 연면적 300㎡이상 ~ 5,000㎡미만

- 특정관리대상시설 중복 지정 배제
  - · 하나의 영업장 시설이 "다중이용건축물"과 "대형 건축물"로 중복지정 되지 않도록 함.
    - \* 다중이용시설중 대형건축물(11층이상~16층미만 또는 5,000㎡이상 ~ 30,000㎡미만)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대형건축물로만 지정 관리
      - ※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물 현황[붙임4]
-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항목에서 소방분야 제외
  - ·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분야에서 소방분야 점검항목 삭제
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1·2종시설물내 다중이용건축물은 지정·관리에서 제외
  - ※ 2014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 참조[붙임5]
-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
  -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되면서 참여 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·제출 독려
  - 공동주택 안전관리자(주택관리사 등)가 교체된 경우 제도참여 시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조치
- 자료수집
  - 일제조사시 시설물별로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 서식1에 따라 작성후 NDMS에 입력
- 공공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
  - 공공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· 보강 등 관련조치 이행

□ 서중연립, 건축물(남가좌동 286-21)에 대한 일제조사 및 시설관리는
부구청장 주재 국장단 회의시('06.5.10) 결정사항에 따라 현재 시설관리
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과에서 실시
IV 조치사항
□「시설물 상태평가 기준(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등급 결정방법)」에
의한 안전등급 결정
- 중점관리시설(A·B·C등급) 또는 재난위험시설(D·E등급)로 지정
※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참조(붙임6)
□ 안전등급평가 결과 D,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의 조치
○ 공공시설 :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
○ 민간시설 :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
□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
제한·금지 등 응급조치
○ 공공시설 :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
하여 긴급 보수·보강 조치
○ 민간시설 :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(정밀안전진단의 실시, 보수·
보강 등 정비,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)
□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
○ A·B·C등급 : 2명(과장, 담당)
○ D·E등급 : 3명(국장, 과장, 담당)

□ 보수·보강,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

□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조사 결과 입력 및 현행화
- 시설관리부서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
NDMS에 입력조치(11.30까지)
- 안전치수과는 NDMS상 시설관리부서에서 입력한 시설물일제조사
결과를 최종 확정
- 고시원, 대형목욕장, 산후조리원, 비디오·게임제공업 등「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지정·관리지침」개정사항에 의거 정리
· NDMS상에서 "관리대상제외시설물"로 정리(붙임7)
□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·해제 통보 등
- 관계인에게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해제사실 통보
- 지정·해제사실 관계인에게 통보 후 공보 또는 게시판·인터넷 고시
V 행정사항
□「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·관리 지침」개정사항 및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준수 철저
□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조사계획 수립·시행
□ 일제조사결과 NDMS 시스템상 최종 확정 철저
□ 일제조사결과 및 해소계획 보고 : 보고서식(붙임8~10)으로 작성하여
제출(기한: '14.11.30) 준수
□ 다중이용시설(고시원, 종교시설, 공연시설, 비디오게임제공업)의 특정
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현황자료을 참고하여 일제조사 실시: [붙임11]

### □ 협조사항

- 건축물준공시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준공내용을 해당부서 (붙임1)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부서에 반드시 통보 조치(해당부서)
-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부서의 담당자가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업무권한 등록신청시 권한부여 조치(건축과)

### 붙임: 1. 일제조사 부서지정 현황 1부

- 2.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1부
- 3.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서(서식) 1부
- 4. 대형건축물내 다중이용시설 입주 현황 1부
- 5.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 1부
- 6.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(별도 파일송부) 1부
- 7. 특정관리대상시설 제외시설 현황 1부
- 8.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(서식) 1부
- 9. 2014년 재난위험시설 해제실적(서식) 1부
- 10. 2014년 재난위험시설조서(서식) 1부
- 11. 다중이용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현황 1부. 끝.